

학생의 권리

섹션 504 및 장애학생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연방법 — 1973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섹션 504**—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 소재한 모든 공립 학교는 반드시 이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섹션 504에 따라 공립 학교는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장애의 특성 또는 심각성과 관계없이 "적절한 무료 공공 교육(FAPE)"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504 에 따라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회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 도움 및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섹션 504에 의거한 장애의 정의?

섹션 504에서는 장애를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광범위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주요 일상 활동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신 자신을 돌보기, 단순 작업 수행,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학습하기, 일하기, 먹기, 잠자기, 서있기, 구부리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및 의사소통과 같은 활동들이 주요 일상 활동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상 활동은 또한 소화기, 장, 방광, 뇌, 순화계, 생식기, 신경 또는 호흡계와 같은 주요 신체 기능을 포함합니다.

상당한 제약이라는 의미 역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결함이 주요 일상 활동을 방지하거나 심각하게 또는 크게 제약하는 경우만 상당한 제약이라는 의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감 조치를 배제한 상태로 장애를 평가합니다.

학생이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감 조치는 배제하도록 합니다. 경감 조치는 학생이 결함의 영향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물, 보철 장치, 보조 장치, 학습을 통한 행동 또는 적응성 신경학적 조절을 포함합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점차 경감되는 결함의 경우 해당 결함이 활성 상태에 있고 주요 일상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 장애로 간주됩니다.

자녀는 위한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립 학교는 교육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 편의가 필요한 해당 학생들에게 적절한 편의, 도움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및 현장학습과 같이 학교에서 후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편의, 지원 및 서비스는 504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4 계획에 해당되는 학생은 (1)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2)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하려면 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학생에게 504 계획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학교측은 다음 세가지 단계에 따라야 합니다: 평가를 의뢰하고, 504 팀을 구성하고 평가합니다.



학부모는 섹션 504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을 평가하거나 504 계획을 개시하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되기 전,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절차상 보호방침(Procedural Safeguards)**이라 불리는 권리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평가를 의뢰합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학생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섹션 504에 따르면 의뢰과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이 장애가 있으며 편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학교측에서 평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측은 장애가 있어 편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거나 의심되는 모든 학생에 대해 섹션 504 평가 의뢰 과정을 수행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학교측은 504 팀을 구성합니다

각 학생별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 504 팀 멤버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504 팀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 선생님, 의사, 간호사 또는 카운셀러와 같이 학생을 알고 있는 사람. 부모님을 반드시 504 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의 참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평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 학교 내 학급 배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504 팀은 학생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의 장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편의, 지원 또는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3. 504 팀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먼저 504 팀이 소집되어 학생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평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성적, 시험 점수, 출석, 양호실 방문, 부모 및 학생의 의견, 교사의 관찰, 의료 또는 심리학적 평가자료, 특수 교육 데이터 및 의학적 정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504 팀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1. 학생에게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가?
2. 그러할 경우, 해당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떠한 편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가?

학교측은 평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504 팀은 동의없이 학생을 평가하거나 504 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가 및 의학적 진단의 역할

의학적 진단에 대해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학교측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의학적 진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04 팀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04 팀이 결정을 내릴 때 의학적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 의학적 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생에게 504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504 계획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504 팀에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4 팀은 학생 평가 시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504 팀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측은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평가 과정을 통해 해당 학생이 하나 이상의 일상 활동을 상당히 저해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결함이 있음이 증명될 경우, 504 팀은 학생이 504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해당 학생이 법에 따라 적절한 무료 공공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 지원 및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직원이 504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학교측은 이때 학부모에게 *섹션 504 절차상 보호방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04 계획이 시행될 때, 모든 학교 직원은 이 계획에 따라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본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또는 편의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측의 의무입니다.

교사들은 해당 학생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구의 **섹션 504 전담관(Section 504 coordinator)**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5. 학교측은 504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학교측은 매년 504 계획은 검토하여 학생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는 504 계획이 학생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4 팀은 주기적으로 섹션 504 및 이에 따라 제공되는 학생의 편의, 지원 및 서비스 수혜 자격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재평가 과정은 최소 3년에 한번씩 수행되어야 하지만 해당 학생의 필요에 따라 좀 더 자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및 섹션 504

학교측에서 장애 학생을 징계할 경우, 특히 정학 또는 퇴학과 같은 징계일 경우, 학교측은 **장애 발현 판단(manifestation determination)**이라 불리는 특별 회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 504 팀은 학생의 장애 또는 504 계획과 징계 대상 행동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04 팀은 장애 학생이 다음과 같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기 전 장애 징후 결정 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 정학 또는 퇴학일수가 수업일 기준 연속 **10일 이상** 또는
- 해당 학년 중 정학 또는 퇴학일수가 **총 10일** 이상으로 **퇴출 패턴(pattern of removal)**을 시사

504 팀은 장애 징후 판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해당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또는 직접적인 상당한 관련이 있는가?
2. 해당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학교측이 해당 학생의 섹션 504 계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가?

두 질문 중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행동은 학생의 장애가 발현된 것으로 학생은 학교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504 팀은 해당 학생의 504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해야 합니다.

상기 질문에 모두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 학교측은 해당 학생을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차별성 부당 행위

장애를 근거로 한 부당행위는 워싱턴 주 공립 학교에서 금지되어있는 일종의 차별 행위입니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차별성 부당행위를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차별성 부당행위의 발생 여부에 대해 자신이 이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학생의 공식적인 항의가 없었더라도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부당 행위를 통해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이 밝혀질 경우, 교직원은 해당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을 즉시 없애야 합니다.

학교측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학교에서 차별적 부당행위가 해당 학생에게 미친 모든 영향을 처리하고 **또한**
2.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적 부당행위에 대한 상세 정보, 지역구 방침 및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자료는,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려사항 또는 이의 해결 방법

학교장 또는 해당 교육구의 섹션 504 전담관과 협의를 통해 차별에 대한 귀하의 우려사항 또는 이의사항을 처리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 차별 및 부당행위를 이해할 때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또한

- 학교장 또는 504 전담관에게 귀하가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합니다.

담당 교육구의 섹션 504 전담관의 연락처는,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school-district-charter-school-compliance-coordinator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식 민원 제기- 차별 및 차별적 부당행위

학교측에서 귀 자녀의 섹션 504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거나 귀 자녀가 차별 또는 부당행위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평등 및 시민권 홈페이지**,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complaints-about-discrimination>, 에서 공식 민원 제기 절차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르도록 합니다.
-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시민권 사무소(**Office for Civil Rights**) 연락처: 206-607-1600 (TDD: 1-800-877-8339) 또는 웹사이트, www.ed.gov/ocr.
-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 연락처: 1-800-233-3247 (TTY: 1-800-300-7525), 또는 웹사이트, www.hum.wa.gov.

자세히 알아보기 질문하기 도움 받기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평등 및 시민권 담당부

360-725-6162 | TTY: 360-664-3631 | equity@k12.wa.us |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

담당 교육구의 섹션 504 전담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school-district-charter-school-compliance-coordinators>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및 부당행위영 대한 자세한 정보, 교육구 방침 및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자료는, <https://www.k12.wa.us/policy-funding/equity-and-civil-rights> 를 방문해 주십시오

본 문서는 주정부 및 연방 시민권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정보는 참조용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OSPI*는 성별, 인종, 신념, 종교, 피부색, 국적, 나이, 제향군 명예 제대 또는 군대 상태, 성별 표현 또는 정체성 등의 성적 기호,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존재 여부, 장애인의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평등한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차별 문제에 대한 질문과 불만 사항은 형평성 및 시민권 사무국(*Equity and Civil Rights Director*), (360) 725-6162 또는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로 문의해 주십시오.

